

대전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8나119382(본소), 2018나119399(반소) 판결 [토지인도 등
지상물매수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8나119382(본소), 2018나119399(반소)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7가단10302(본소)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러스

담당변호사 박동식, 탁인상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무

변론 종결 2019. 8. 26

판결 선고 2019. 9. 27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7가단10302(본소), 2018가단 222720(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본 소 청 구 취 지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대전 유성구 C 답 3,020㎡ 지상의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n 부분 비닐하우스 206㎡, 같은 감정도 표시 9,8, 11, 10, 9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비닐하우스 793㎡, 같은 감정도 표시 7, 6, 13, 12,7의 각 점을차례로 연결한 선내 rz 부분 비닐하우스 779㎡, 같은 감정도 표시 5, 4,15, 1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e 부분 비닐하우스 787㎡ 를 각 철거하고, 대전 유성구 C 답 3,020㎡를 인도하라.

반 소 청 구 취 지

원고는 피고에게 36, 825, 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36, 825, 6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고 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 ' 2. 추가 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쪽 [표 1-2] 순번 2번의 임대기간 중 '2010. 3. 30.'을 '2010. 3. 30.'으로 고친다,

○ 4쪽 나) (2)항 2줄의 'J호'를 'K호'로 고친다.

○ 5쪽[인정근거]와 9쪽 1줄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고친다.

○ 5쪽 2) 가)항 5줄의 '제2조는'을 '제2항은'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제 3차임대차 계약서는 원고가 이사건 토지의 I편입시 보상금 수령권이 자신 에게 있음을 확실하게 하려는 의도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2)원고가 I에 편입될 때까지 농사를 지어도 되는데 편의 상임대기간이 2년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피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가 제 3차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였으므로, 항소이유서로써 위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따라서 제 3차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나. 판단

을 4내지 6호증의 각기재 및 당심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위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혜영판사 신영희판사 맹현무

별지